

흑석재정비촉진계획(흑석9구역) 변경 결정(안)에 관한

의견서

제25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한 흑석재정비촉진계획(흑석9구역) 변경 결정(안)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.

- 본 안건은 서울시고시 제2006-357호(2006.10.19)로 흑석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, 서울시고시 제2008-307호(2008.9.11), 제2015-122호(2015.5.7)로 결정(변경)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대하여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9조제3항에 따라 동작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써
- 흑석동 90번지 일대 흑석9재정비구역에 대하여 「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촉진계획 변경 가이드라인」 등을 적용하기 위한 변경 계획(안)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에 동의함
- 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공청회 개최를 통한 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종합하는 등 인근 흑석재정비촉진구역과 연계하여 우리 구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최적의 계획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